

2026년 서울 소상공인 등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4차 이용자 모집 공고

서울시에서는 출산·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및 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9. 3.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
- 사업기간 : 2026년 9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워라벨 포인트 참여 기업 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※ 붙임 2 참고
 - 서울시 거주자로 생후 3개월 ~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자
 - ※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. 9. ~ 2026. 6. 기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
 - '24~25년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도 '26년 지원요건 충족시 재신청 가능
 - 야간근로자는 22시~익일 06시 사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
 - ※ 교대·순환근무자, 노무제공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포함
- 자격요건 ※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
 - ① 영업지(근무지)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
 - ② 신청인(부 또는 모)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
 - ③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만 해당
 - ※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. 9. ~ 2026. 6. 기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
 - ④ 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자
 - 소상공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

-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
 - ※ 서울시 워라벨 포인트제 가입 여부는 각 기업 인사팀(인사 담당자)에 문의 필요
- 22시~익일 6시 사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

□ 제외 대상

- (중복제한) 서울형 손주돌봄수당(친인척형, 민간형) 중복 지원 제외
- (제한업종) 「소상공인 정책자금」 융자지원 제한업종 ※ 붙임 1 참고
- (지원종료) 타·시도 전출 시 이용 종료
- (야간근로자 중 제외 대상)
 - 일시적 야근·단순 연장근로자
 - 주된 근무 장소가 주거지인자
 - 본인 선택에 따라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선택근로자

2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(주간·심야)
- (이용한도) 자녀 1인 360만원, 2인 540만원 이내(최대 2자녀 지원)
 - (주간요금) 시간당 이용요금의 약1/3 본인부담(약 5~6천원)
 - (심야요금)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, 22시~익일 06시 이용분에 대해 시간당 본인 부담금 2천원 적용 ※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~12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제공
 - (지원내용) ※ 서비스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

구분	아동 연령	지원 내용
주간 돌봄 (06시~22시)	3개월 이상 ~ 12세 이하	등하원 동행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재우기/깨우기, 위생관리, 돌봄 후 뒷정리, 실내 놀이, 아이 돌봄에 수반 되는 가사 돌봄 포함
심야 돌봄 (22시~06시)	24개월 이상 ~ 12세 이하	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재우기/깨우기, 수면·야간 생활 관리 등

- ※ 선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 4개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고 돌봄 매칭 후 서비스 이용 가능
- ※ 심야돌봄서비스는 심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

○ 이용요금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(예시)

구분	선정 자녀수	이용요금	서울시 지원	본인부담금
주간 돌봄 (06시~22시)	1	15,000원	10,000원	5,000원
	2	22,500원	15,000원	7,500원
심야 돌봄 (22시~06시)	1	24,000원	22,000원	<u>2,000원</u>
	2	31,500원	29,500원	

※ 위의 표는 예시로 각 기관의 서비스별 이용 시간과 요금은 다를 수 있음

※ 요금표 외 업체별 기타 서비스 비용 발생분은 100% 자부담 이용

※ 심야돌봄서비스는 심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

3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(신청기간) 2026. 9. 3.(목) ~ 9. 18.(금)

□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(탄생육아 몽땅정보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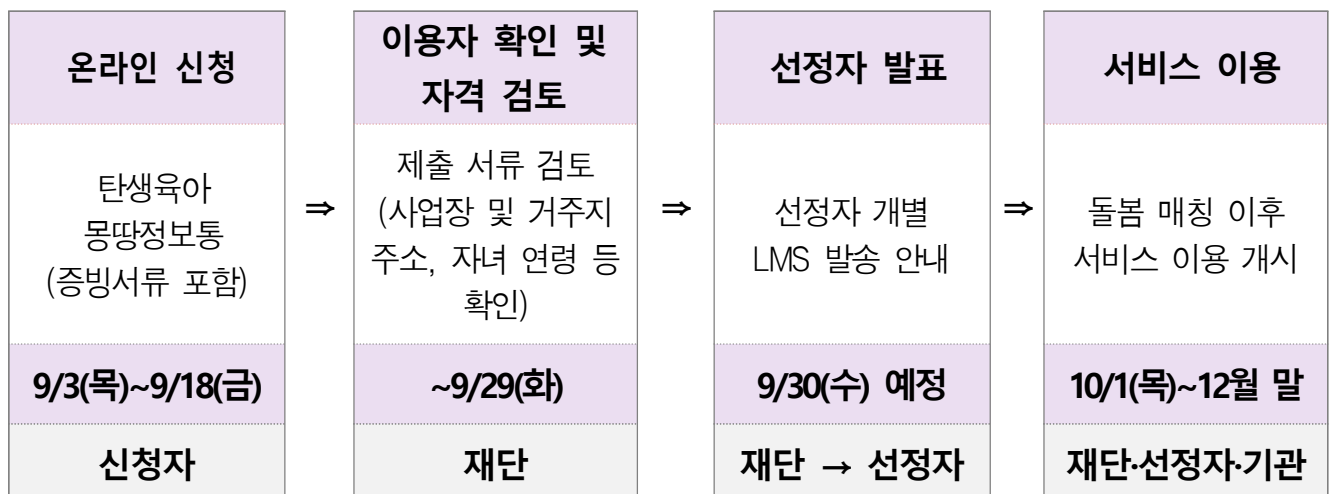
○ (신청링크)  <https://umppa.seoul.go.kr/>

– 탄생육아 몽땅정보통>지원사업신청>육아>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지원

□ (결과발표) 2026. 9. 30.(수) 발표 예정(선정자 개별 안내)

※ 자격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(선정 절차)



○ (신청 시 자동 연계)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동 연계로 별도 제출 불필요

○ (대상별 필수서류) 온라인 신청 시 대상별 필수 첨부 서류

대상 구분	필수서류	발급처
소상공인 사업주·근로자	소상공인 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	재직증명서 (직인 필수 포함)	각 사업장 (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)
야간근로자	야간근로 증빙자료	-

○ (야간근로자 증빙서류) 아래 예시 중 택1

구분	증빙자료
임금근로자 (순환·교대·탄력)	교대표, 순환근무표, 근무 편성표, 근로계약서 등
노무제공자	용역계약서·위탁계약서 등 노무제공 관계 확인자료 + 업무·노무 제공 내역 등 시간 확인자료
프리랜서	계약서, 업무수행 내역 등 업무시간·장소 확인자료
배달·플랫폼 종사자	플랫폼 운행·접속·배달·업무수행 내역 등
증빙자료 제출 곤란시	<u>사업주 확인서</u> ※ 붙임3 참고 + 제출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

※ 증빙이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

※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

- 일시적인 야근 또는 일회성 연장근무자
- 재택근무 등 주된 근무장소가 본인의 주거지인 경우
-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(조정)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근무한 경우

5

신청 시 유의사항

- 돌봄서비스는 본 사업의 선정기관 4개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음
- 심야돌봄서비스는 심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
- 서비스 이용 중 기관 변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함
-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영유아·다자녀 가구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함
-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, 기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
 - ※ 외국인 신청자 등 법적 자녀 또는 혼인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, 결혼·이민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신청 시 선택한 희망 기관을 통해 이용요금 및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안내받으며, 돌보미 매칭 및 최종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

6

문의처

- 담당자 :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본부 일·생활균형사업실
- 연락처 : 02-3280-0312
- 이메일 : ssgong@seoulwomen.or.kr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시 기준

표준산업 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- **지원대상 : 22시~익일 06시 사이 정기·반복 근로를 제공하는 자**
- 교대·순환근무자,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자, 심야영업 종사자, 노무제공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포함
 - 정기·반복 근로 기준 : 월 4회 이상 야간근로

교대근무자	일정한 근무편성에 따라 주간·야간 등의 근무시간대를 교대로 근무하는 자
순환근무자	근무조·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순환·변경되는 자
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	특정 주·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자(근로기준법, 제51조·제51조의2)
심야영업종사자	영업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정기·반복적으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
노무제공자	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(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제91조의15)
플랫폼 종사자	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(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제91조의15)
프리랜서	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자 (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)

※ 기존 민간아이돌봄서비스 공통 자격요건 적용

- **자격확인 : 근로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증빙기준 적용**

구분	증빙자료
임금근로자(순환·교대·탄력)	교대표, 순환근무표, 근무 편성표, 근로계약서 등
노무제공자	용역계약서·위탁계약서 등 노무제공 관계 확인자료 + 업무·노무 제공 내역 등 시간 확인자료
프리랜서	계약서, 업무수행 내역 등 업무시간·장소 확인자료
배달·플랫폼 종사자	플랫폼 운행·접속·배달·업무수행 내역 등
증빙자료 제출 곤란 시	사업주 확인서 + 제출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

사업주 확인서							
신 청 자 인적사항	성 명		생 년 월 일				
	주민등록상 주소지		연 락 처				
사 업 장 정 보	사 업 장 명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	
	사 업 장 주 소		실 제 근 무 지 주 소				
	※ 사업장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동일한 경우 “최동”으로 기재						
	사 업 장 연 락 처		대 표 자 명				
근 무 형 태	※ 해당하는 근무형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	☐ 교대근무자	일정한 근무편성에 따라 주간·야간 등의 근무시간대를 교대로 근무하는 자					
	☐ 순환근무자	근무조·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순환변경되는 자					
	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	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자					
	☐ 심야영업종사자	사업 또는 영업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정기·반복적으로 근로하는 자					
	☐ 노무제공자	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 등에 따른 노무제공자					
	☐ 플랫폼 종사자	플랫폼 등을 통하여 정기·반복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					
	☐ 기타	(직접기재)					
근무상황	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실제 근무시간		시 분 ~ 익일 시 분				
	월평균 야간 근무		주 ____회 / 월 평균 ____회				
	기타 ※추가 설명 필요시 기재		(직접기재)				
야간근로 확인사항 ※ 아래 항목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① 정기·반복 야간근무 여부	일시적인 야근 또는 일회성 연장근무가 아니라, 월 4회 이상 22시부터 익 일 06시 사이에 정기·반복적으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함					☐ 예 ☐ 아니오	
② 실제 근무 장소 확인	주된 근무장소는 신청자의 주거지가 아니며, 상기 기재된 사업장 또는 실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					☐ 예 ☐ 아니오	
③ 야간근무시간 결정 방식확인	신청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·조정하여 임의로 야간시간대를 선택 한 것이 아니라, 사업장의 근무편성, 영업시간, 업무 특성 또는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정기·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무임					☐ 예 ☐ 아니오	
④ 실제 근무 상황 일치 여부	본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주기, 근무시간, 실제 근무지 및 업무내용은 현재 신청자의 실제 근무상황과 일치함					☐ 예 ☐ 아니오	
「2026년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」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며,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 2026. 9. . 대표자(확인자)명 : 인(직인)							
확인 자	소속부서		직위		성명		연락처